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호 2854

발의연월일: 2024년 3월 8일

발 의 자:임희도의원

1. 제안이유

노후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집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나. 집수리 지원사업의 종류와 집수리 관련 행정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안 제6조)
- 다. 집수리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결과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4. 3. 5. ~ 3. 10.

○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바. 부서의견(도시전략과) : 기한 내 회신 없음

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 내 열악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편익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단독주택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.
 - 2. "단독주거지역"이란 단독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.
 - 3. "집수리"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
 - 4. "관리주체"란 단독주거지역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단독주거지역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

집수리 지원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단독주거지역의 집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지붕 · 외벽 · 단열 · 방수 · 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
 - 2. 주차장 조성(담장철거), 화단·쉼터 조성, 담장·대문공사 등 경 관개선 사업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재정지원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
 - 2.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, 융자 및 이자보전
 - 3. 단독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
 - 4.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)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8조(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단독주거지역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제9조(전담조직 설치)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 제10조(자문단 구성 등) ①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, 건축·시공·전기설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 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 - ③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집수리 사업대상 및 지원범위
 - 2. 방수·결로·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단열·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
 - 4. 균열·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
 - 5. 노후된 상 · 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의 단독주거지역 및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